

[별표 5] <개정 2008.2.5>(붙임10)

소각 또는 매몰기준(제25조관련)

1. 소각기준

구분	소각 실시 장소	소각 방법	비고
사체	1.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. 수원지·하천·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	1.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. 2. 주로 땃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. 가. 연료 가축의 사체,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땃나무 및 보조연료(볏짚·건초·타르·석유 등)를 이용한다. 나.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,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판다.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·건초 등을 깔고, 타르·석유 등을 뿌린 후 땃나무를 쌓는다. 그 위에 가축의 사체를 두고 불을 붙여 완전하게 태운다.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그 장소에서 매몰한다. 구덩이가 있는 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하여 태운다.	1.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매몰할 것 2. 사체와 물건 등을 태운 장소와 그 부근을 소독할 것
오염물건	1. 소각로 2. 수원지·하천·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	1.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. 2. 당해 물건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땃나무 및 보조원료(볏짚·건초·타르·석유 등)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태운다.	○오염물건을 태운 후 남은 재는 매몰할 것

2. 매몰기준

가. 매몰의 준비

- (1) 매몰장소는 수원지·하천·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.
- (2)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죽은 것이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사체의 매몰

- (1)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.
 - (가)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.
 - (나)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.
 - (다)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부터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사체를 투입한다.
 - (라) 사체를 흙으로 0.4미터 이상 덮은 다음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, 지표면에서 1.5미터 이상 성토를 한 후 생석회를 도포한다.
 - (마)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,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.
- (2) 사체를 랜더링(rendering)처리시설(열처리정제시설)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,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.

다. 사체 등의 운반

- (1)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·매몰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.
- (2) 사체 등의 소각·매몰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.
- (3) 동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·매몰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.

8.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송 및 처리 요령

1. 소각·매몰 또는 랜더링 처리를 위한 가축의 운송 요령

- 1.1. 가축방역관은 다음 조치사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을 운송할 수 있도록 지시, 감독 및 확인하고 최종조치가 완료된 후 신속히 방역조치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1.1 살처분 대상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 - 운송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, 타액 등 분비물,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.
 -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중 오물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1.2 소각·매몰장소 또는 랜더링 처리시설로 살처분 가축(사체)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적재함 바닥을 혈액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.
 - 1.1.3 가축의 사체 적재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작업에 사용한 기구 및 도구, 장소 등은 **제4장 7. 청소·세척 및 소독요령**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.
 - 1.1.4 운송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살처분가축이 처리장에 인계될 때까지 전과정(적재·운송·하역과정, 출발전·인계후 차량 소독 등) 및 사후처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.
 - 1.1.5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여서는 안되며,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 - 1.1.6 가축의 사체로부터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가축사체의 하차를 완료한 후 운송차량은 세차한 후 **제4장 7. 청소·세척 및 소독요령**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하고 마지막 운송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을 운송해서는 안된다.
 - 1.1.7 가축사체 하차작업에 사용한 기구 및 도구, 장소 등은 “청소·세척 및 소독요령”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.
 - 1.1.8 살처분한 가축의 운송에 참여한 사람은 **제4장 5. 살처분·소각 및 매몰**

요령(4. 살처분 뒤 후속 방역조치 요령)에 따라 철저히 이행한다.